

學校保健教育制度 및 運營上의 問題點

金 相 煜 *

1. 學校保健教育 制度

學校保健教育 制度는 學校保健教育을 실시하기 위한 지지적 체계로 法, 機構, 人力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學校保健教育 制度는 學校保健事業 (School health program)의 일환으로 保健教育을 실시하는 制度와 學校의 教育事業 (Educational program)에 의하여 正規 敎科課程에서 실시하는 制度로 差別할 수 있다.

學校保健事業에서의 保健教育은 學生 및 敎職員의 健康管理 (health care)를 위한 수단으로써, 養護敎師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염병 유행 시기에 전염병 예방교육, 예방접종시 예방접종교육, 여름철에 수영안전교육, 소풍시 사고 예방교육 등으로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들이다.

學校保健事業에 의한 保健教育은 文敎部가 매 해 발행하는 學校保健管理 指針(基準)에 의하여 市·道敎育委員會가 이를 각지역 여건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學校에 전달하면, 학교에서(養護敎師등)이 計劃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서울特別市 敎育委員會는 1987년부터 주당 6시간 정도의 保健教育을 실시하도록 學校保健管理 指針에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學校長이 협의하여 敎育內容을 선정하고 시간표를 작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한 保健教育은 學校保健事業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그 學校의 여건, 學生 및 敎職員의 特性에 따라 敎育內容, 敎育時間, 對象이 설정된다. 그러므로 學生

들의 자기건강관리 능력개발을 그들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속적으로 주도해 가는 敎育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이 敎育은 非正規 敎科課程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文敎部나 敎育委員會의 敎育的 指導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敎育委員會(保健係)로서도 이를 지도평가할 인력과 조직의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인은 學校保健事業의 일환으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保健教育水準을 우리나라 學校保健教育 制度에 비중을 두어 論議하기 보다는 본 원고에서는 정규 敎育課程에 의한 保健教育 制度를 法規, 文敎部 機構등으로 구분하여 論議해 보고자 한다.

1) 法에 의한 保健教育 制度

法에 의한 學校保健教育 制度는 文敎部令으로 제시된 敎育課程에 관한 규정의 분석에 의해서 알 수 있다.

敎育課程은 敎育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學校와 敎師의 계획하에 행하여지는 學生들의 學習內容과 경험의 총체를 의미한다. 이는 다시 正規 敎育課程과 非正規 敎育課程으로 구분할 수 있다. 敎育은 계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正規 敎育課程이 非正規의 것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國民學校의 正規 敎育課程의 변천에 따른 保健敎育의 目標과 指導內容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敎育課程은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가 처한 특수한 狀況을 반영하면서 네차례에 걸친 개정을 하였다.

1946년부터 1954년의 교수 요목기에는 교과 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에 의거하여 健康敎育에 관

* 文敎部 義務敎育課

한 敎科目名을 保健科로 하였다. 이는 學校에 있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뚜렷했었음을 알 수 있다.

敎育課程 제 1기 제정기에는 文敎部령 제 44호가 1955年 8月 1日 공포되었다. 이 시기에 敎科目名은 교수 要素기와 마찬가지로 保健科로 남아 있었고 원만한 環境下에 신체 활동을 通하여 身體各部를 고르게 튼튼히 발달시키고 굳세고 아름다운 정신과 건전한 사회적 性格을 기르며 衛生生活을 습관화 하여 民主的 社會活動에 자기의 최선을 다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고 하는 目的下에 신체적 목표, 사회적 목표, 지적·정서적 목표, 안전지도, 레크레이션 지도로 크게 5가지로 目標을 세우고 그 세부 目標을 통하여 달성토록 하였다.

그 구체적 目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기 保健敎科의 目標

(1) 身體的 目標

1. 운동을 통하여 身體의 기초적 技能을 助長시킨다.
2. 身體 제 기관의 발육, 발달을 조장시킨다.
3. 대근육 활동에 의한 신체 성장을 도모한다.
4. 자기 신체에 적합한 운동을 취미적으로 실시하도록 장려한다.
5. 좋은 자세의 지도를 한다.
6. 신경과 근육의 協助 作用의 기초적 훈련을 한다.
7. 身體의 결함 矯正에 유의한다.
8. 율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초적 기능을 기른다.

(2) 社會的 目標

1. 명량한 性格을 기른다.
2. 우애와 동정심을 기른다.
3. 他人의 物件과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4. 예의를 잘 지키는 양순한 態度를 기른다.
5. 자기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性格을 기른다.
6. 단체와 협력하여 잘 놀 수 있는 性格을 함양한다.

7. 公衆 衛生을 잘 지키는 態度를 기른다.

9. 규칙에 순응하는 性格을 기른다.

(3) 知的, 情緒的 目標

1. 각종 놀이에 대한 知識을 습득시킨다.
2. 健康生活에 대한 知識을 습득시키고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한다.
3. 身體 각부의 명칭 및 作用의 개요를 습득시킨다.
4. 身體 운동에 대한 간단한 原理를 습득시킨다.
5. 곤란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養成한다.
6. 사리 판단에 대한 基礎 能力을 養成한다.
7. 리듬을 通한 基礎的인 表現, 創作 感想 力을 기른다.

(4) 安全 指導

1. 안전한 장소를 알게 한다.
2. 안전한 놀이를 지도한다.
3. 교통안전에 대한 지도를 한다.
4. 水上, 火災, 水上등의 安全에 대한 지도를 한다.

(5) 레크레이션 지도

레크레이션 活動에 참가하는 습관을 기른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保健이란 學生들이 그들의 健康問題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健康을 유지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健康이란 신체적인 부분의 건강을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신·사회적인 모든 부분을 통합한 의미에서의 건강을 말하는 것으로 제 1기의 保健科의 目標은 健康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세워진 것으로 여겨지나 구체적 目標에서 제시된 내용은 운동을 통해서만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도덕 및 사회생활부분이 강조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目標에 따른 保健科의 지도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체조 놀이

- ① 맨손 놀이
- ② 재주 놀이

(2) 놀이

- ① 달리기 놀이
- ② 던지기 놀이

- ③ 땀뭍기 놀이
- ④ 공놀이
- ⑤ 물놀이

(3) 리듬 놀이

- ① 노래 맞추기
- ② 표현 놀이

(4) 위생

- ① 인생 생활
- ② 몸-신체 구조
- ③ 바른 자세
- ④ 음식과 몸-음식과 건강
- ⑤ 청결 : 몸의 청결, 집안청결
- ⑥ 병 : 회충구제, 전염병 질환
- ⑦ 보건행사

제 1기 保健科의 指導內容으로는 주로 놀이를 통하여 健康을 성취하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놀이나 스포츠는 學生들의 健康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活動이며 學生들의 흥미와 직접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教育方法이라 할 수 있으나 건강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教育이 계획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保健 부문마저도 위생과 전염병관리에 관한 지식전달로 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1963년 제 2기 教育課程 개정기의 文敎部令 제 119호 (1963. 2월 공포)에 따르면 保健敎科 目名은 保健科에서 體育科로 바뀌었으며 보건에 관한 교육은 體育敎科의 일부로 삽입되어 다루도록 하였다.

제 2기 體育敎科의 目標

- (1) 여러가지 運動을 통하여 基礎的 運動能力을 조장하며 身體의 모든 기관을 고르게 발달하도록 한다.
- (2) 놀이를 통하여 명량한 性格과 公定하고 協同하는 態度를 길러, 자기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회성을 기른다.
- (3) 놀이와 健康生活에 대한 基礎的 知識을 알게 하며, 合理的 身體活動을 함으로써 정서를 순화하고 生活를 풍부하게 한다.
- (4) 保健衛生과 安全한 生活方法을 알려서 위급한 狀態에 대처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른다.

- (5) 레크레이션 活動에 참가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하며, 生活를 윤택하게 함으로써 體育科의 目標을 달성하도록 하였다.

體育科 目標에서 나타난 保健은 돌발적이고 위급한 狀態에 대처하기 위한 保健教育을 保健에 관한 基本目標로 설정해 놓음으로써 1차에서 보다 2차개정에서 오히려 保健의 의미가 전염병관리중심의 공중보건의 의미에서 응급처치의 개념으로 축소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體育科의 保健에 관한 指導內容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衛生生活 : 衛生에 좋은 옷 입기
 - 목욕하기, 파리잡기, 양치질하기
- (2) 몸 : 몸의 構造와 作用
- (3) 바른 자세
- (4) 음식과 몸
- (5) 청결 : 집안 청결, 몸의 청결
- (6) 病 : 회충구제, 전염병관리
- (7) 운동과 保健

등의 內容으로 제 1기의 保健科의 保健教育의 指導內容과 별다른 부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文敎部令 제 310호에 의한 1973년 2월 제 3차 教育課程 改正에서도 保健教育에 관한 내용은 體育敎科에서 指導하고 다루도록 하고 있다.

目 標

- (1) 여러가지 運動을 통하여 강한 체력과 강한 의지력을 길러서 왕성한 活動力과 實力을 가진 새 국민으로 자라게 한다.
- (2) 운동경기를 통하여 規制과 秩序를 지키며 주어진 부서에서 책임을 다하고, 서로 힘을 모아 끝까지 노력하는 태도를 길러서 올바른 경쟁심과 협동단결력이 강한 새 국민으로 자라게 한다.
- (3) 個人衛生과 公衆保健에 必要한 基礎知識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能力과 態度를 길러서 健康하고 安全한 生活를 할 수 있는 새 국민으로 자라게 한다.
- (4) 運動을 生活化하여 情緒를 순화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態度와 美的 表現의 창작력을 길러서, 명량하고 활발한 性格을 지닌 새국

민으로 자라게 한다.

제 3기 敎科改正에서는 健康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 運動뿐 아니라, 衛生과 公衆保健에 관한 知識과 生活化가 必要하다는 인식과 保健에 관한 社會的 要求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敎科指導 內容에서는 目標에서 나타난 保健에 대한 강한 關心과는 다르게 1,2,3 학년 敎科에서 保健敎育이 정규교과의 指導內容에 포함되어 있지않고 있다. 국민학교 저학년의 保健에 대한 敎育은 健康習慣의 生活化란 측면에서 볼 때 정규 敎科課程에 保健敎育이 강화되었더라면 이때의 學校保健敎育 目標가 훨씬 효과적으로 달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5,6 학년에서는 公衆保健에 관한 기초지식과 더불어 감기, 결핵, 위장계통질환 등 保健知識의 學習으로 전문적 保健敎育 內容이 포함되어 있었다.

1981.12월 제 4 차 개정의 문교부 고시 제442 호에서도 保健敎育을 體育敎科에서 지도하도록 하였다.

體育敎科의 目標

여러가지 놀이와 운동을 통하여 체력과 基礎的인 運動 기능을 기르고 健康과 運動의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즐거운 生活態度를 가지게 함을 目標로 하며 그 目標 달성을 위해

- (1) 간단한 運動에 즐겁고 활발하게 참여하여 基礎的인 運動機能을 기른다.
- (2) 運動과 健康生活에 必要한 基礎 知識을 습득하여, 이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 (3) 運動의 規則과 예의를 지키고, 서로 協力하여 바르게 生活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 (4) 運動에 흥미를 가지고 여가를 선용하는 즐거운 生活을 할 수 있는 態度를 기르는 것으로 한다.

제 4 차 개정시는 제 3 차 개정에서 보다 오히려 健康의 시대적 要求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運動과 健康生活에 必要한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이를 실천하는 態度를 기른다”라는 敎育目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保健知識과 態度 실천은 運動에 관한 것으로 국한지어졌다.

指導內容을 살펴보면

1 학년은 식습관, 개인위생, 변소, 급수시설에

관한 內容, 2 학년에서는 식습관, 치아관리, 3 학년에서는 치아관리와 충치의 원인과 예방법, 個人衛生과 관련된 질병예방, 4 학년에서는 영양소와 健康, 눈, 코, 귀, 목등의 질병의 원인과 그 예방법, 유행성 질병에 관한 保健敎育內容, 5, 6 학년에서는 소화기, 호흡기 질환의 원인과 예방법, 건강검단의 중요성, 성장과 발달에 必要한 영양소, 기생충관리, 구급처치 등 학년별 保健敎育은 체계적이며,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內容을 포함하고 있어 1,2,3차에 걸친 개정에서 敎科課程의 指導內容중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이상의 4 차에 걸친 敎育과정 개정은, 보전敎育에 대한 敎과목명이 보전과에서 체육과로 변화하도록 뒷받침하였으며, 법령에 제시된 학교보전敎育 目標도 보전敎育에 대한 目標에서 체육敎育의 하위목표로 축소되고 더우기 그 目標자체가 개정을 거듭할수록 체육위주의 보전목표로 되어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 우리나라 사회의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음이 보전敎育내용에서 엿볼 수 있었다. 법령에 제시된 보전敎育내용은 개정이 거듭되면서 보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포함되었음이 나타났다. 이는 敎育目標의 변화와 궤를 같이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學校保健機構에 의한 保健敎育 制度

學校保健에 관련된 기관에는 保健社會部, 文敎部 등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져 있으나 여기서는 學校保健을 政策的·行政的으로 지원하고 관장하는 行政機構의 中心인 文敎部の 직제 개편 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學校保健敎育制度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정부수립에 따라 1948년 11월 4일에 대통령령 제 22호 공포에 의해 발족한 文敎部는 文化局안에 生活改善課와 體育課를 두고 體育課에서 體育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게 하겠으며, 그 후 1년후인 1949년 10월에는 대통령령 제 189호에 의거하여 文敎部 직제를 改正 生活改善課를 폐지하고 文化局에 體育課만을 단독으로 두었다. 그 후 6.25 등 國內의 혼란 등으로 行政機構의 改編없이 근 10년간을 유지해 오다 1961년 10월에

각령 제 180 호에 의거하여 체육과는 體育局으로 승격되고 體育局에는 學校體育課와 國民體育課를 설치하였다. 學校體育課에서는 學校保健 및 體育, 學校體力官理, 學徒軍事訓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때 국민학교에 保健敎科를 폐지시키고 體育敎科로 개편하였다. 또한 1963년 12월 각령 제 1737 호에 의거하여 體育局은 文藝體育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體育課는 學校體育係, 國民體育係로 세분화되어 係長은 行政事務官으로 하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1968년 7월 대통령령 제 3512호의 공포로 文藝體育局은 社會教育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社會教育局에 體育課를 두고 學校保健과 體育에 관한 業務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1970年 學校 學生들의 體力向上을 위하여 學校給食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해 1월 26일 대통령령 제 4535 호의 공포로 보통교육국에 학교급식담당관을 두어 學校의 급식업무에 대하여 局長을 직접 보좌하도록 하였으며 一般學校保健에 관한 業務는 社會教育局의 體育課에서 그대로 담당하도록하여 保健業務를 보통교육과 사회교육국에서 다루는 이중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또한 그해 8월 대통령령 제 5320 호 공포에 의해 體育局이 탄생되어 體育課에서 학교체육의 지도감독 및 각급 학교체육교사의 지도감독, 양호교사 및 學校校醫 수급계획과 지도감독, 학생보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1973年 3月 9日 대통령령 제 6531 호로 文敎部 직제 개편에서는 체육국 안에 國民體育課와 學校體育課 및 學校給食課를 설치하여 일반 保健업무와 學校給食業務를 별도의 課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77年 9月에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사건으로 인하여 서울 삼양국교어린이 1명이 사망하고 서울시내 국민학생중 동일업체의 식빵을 먹은 5,575명이 식중독환자로 앓고있음이 밝혀져 제빵 공급업자에 의해서 공급되어 온 제빵공급 일반급식이 폐지되고 學校給食課의 업무가 한가하니 이 시점에 학교보건을 전공하는 人力이 담당하여 업무의 발전을 기해야 한다는 이유등으로 78年 5月부터 學校保健業務를 學校給食課에서 담당케 되었으며, 79年 3月 19日 대

통령령 제 9380 호 문교부 직제 개정시 學校保健을 총괄하는 課의 명칭으로 체육국안에 학교보건과 국내 체육을 담당하는 體育課와 국외체육교류를 위한 체육교류과로 세분화하여, 文敎部 직제 개편이래 처음으로 學校保健을 진달하는 課가 등장하게 되고 따라서 지방교육위원회 직제에는 學務局 社會體育課에 保健體育係(계장은 체육전공 장학관)에서 분리 보건을 전담하는 保健係(계장 보건직 5급)를 창설하여 천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學校敎育에 있어 保健과 體育의 구별 및 學校保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6.25 이후 外援에 의하여 시작한 學校給食에 한끼의 식사를 학교가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비로소 영양급식을 표방하면서 급식실시 학교에는 영양사를 두게 하고 학교保健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불태 學校保健課의 설치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후 文敎部는 81년 11월 2일 대통령령 제 10535 호로 정부기구 축소방침에 따라 사회국제교육국과 체육국의 기능이 통·폐합 되면서 학교보건과는 폐지되고 신설된 체육국제국의 學校體育課에서 學校保健業務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82년에 86 아시안게임 및 88 올림픽 유치로 인한 體育의 상대적 관심 및 이를 대비하기 위한 業務의 확대로 문교부 體育局을 근간으로한 體育部로 82年 3月 20日 政府組織法이 改正되어 창설되었으며, 일반學校保健은 文敎部의 普通教育局 義務敎育課에서 學校給食은 體育部 체육진흥국 학교체육과에서 담당케하여 오고 있다.

文敎部는 86年 12月 27日 대통령령 12021 호에 직제개정시 義務敎育課에 保健職 5급을 두어 現在까지 학교보건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있으며, 給食業務 또한 體育部에서 文敎部로 이관하여 교과과정상의 보건교육과 연계하여 영양교육 만성퇴행성질환 예방교육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다는 관련 학계 의견과 일선 교육가들의 건의, 여론이 일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같이 學校保健敎育을 관장하는 부서는 體育局 혹은 體育課이었으며 이 부서안에서 學校保健을 담당하는 人力에 의하여 學校保健事業의 일환으로 保健敎育이 실시되도록 지침을 작

성하기로 하였다.

文敎部의 직제개편 과정을 보아도 學校保健敎育이 고위 정책가나 보건관련 학계에서도 學校保健敎育을 중요시 하지 않고 방관 또는 이해관계에 얽힌 사연 또는 영역확장에만 골몰하지 않았는지 하는 생각을 해본다.

II. 學校保健敎育 制度의 運營上의 문제점

學校保健敎育 制度는 學校保健事業의 일환으로 운영되거나 정규 敎育課程에서 운영되는 두 가지가 있다.

學校保健事業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學校保健敎育은 文敎部 義務敎育課의 정책적지원과 市道敎育委員會 사회체육과 保健係의 행정지원으로 일선학교 양호교사, 담당교사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학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지역적인 健康問題에 대한 敎育을 주로 한다.

② 學生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기 健康管理能力 開發이 어렵다.

③ 비정기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한 保健敎育이 養護敎師 또는 담당교사의 능력이나 學校의 관심에 의하여 좌우된다.

④ 보건교육에 대한 실천여부 및 평가방법이 없으며 이를 지원할 敎育委員會의 保健係가 미약하고 보건인력도 부족하다.

⑤ 學校保健事業을 통한 保健敎育에 대한 敎育행정가 및 관계관 업무종사자의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다.

⑥ 養護敎師의 保健敎育에 대한 敎育的 뒷받침이나 열의가 부족하다.

이상의 學校保健事業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學校保健敎育의 문제점을 보면 非正規 敎育課程에 의하여 운영되는 敎育이 가질 수 있는 문제와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행정기구가 취약하여 나타나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學校保健敎育이 바람직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는 正規 敎育課程에 의한 保健敎育의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① 體育이나 타교과의 目的達成을 위한 지식으로 保健敎育이 이루어지고 있어 學校保健敎育 본연의 目的인 學生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正規 敎育과정에서 의한 保健知識이 學校保健事業과 연계가 없다.

③ 保健敎育을 담당하는 교사가 충분한 保健知識없이 敎育하게 되므로 敎師 自身도 흥미나 관심이 없고 학생도 충분히 학습을 할 수가 없다.

④ 敎育대학등의 교사 양성과정에 보건에 관한 강의시간이 적고 전문교수 부족으로 인한 保健敎育을 담당할 정도의 敎師가 배출되고 있지 못하다.

⑤ 교원의 재교육과정에 보건관계 교과 강의가 부족 또는 없으므로 보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기회가 없다.

이상의 正規 敎育課程에서 교사가 실시하고 있는 保健敎育의 문제점을 보면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인식을 인정하면서도 學校保健의 교과과정 保健敎育은 소홀히 되고 있으며, 체육시간에 할애된 보건편 분야도 운동의 지도에만 전념하고 있지 않으나 우려를 갖게 된다. 국민 스스로가 자기 건강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개발을 위한 敎育적 측면에서, 保健敎育 실시여부에 대한 재고없이 保健事業의 일환으로 실시된 보건업무는 오늘날 일선 敎育者들 사이에 폐지 또는 자율실시등이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인 양 잘못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학교에 비치된 학생기록부를 보건 敎育적 면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교원의 잡부 경감, 학교교원 영비절감, 보관상의 불편함 등의 이유를 들어 정부가 실시하는 창안제도에 제출되고, 인건비가 많이 드는 양호교사의 각급 학교 배치보다는 교원 잡부를 경감시킬 수 있는 人力, 즉 사무보조원을 늘려 응급처치도 하고 양호실도 관리하며 학교 잡일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발상은 모두가 學校保健敎育이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이에 정상적인 學校保健教育 實施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개선책을 제시하는 바이다.

1) 保健教育의 실시시기는 빠를수록 좋으므로 국민학교부터 보건과 체육 및 타교과목을 분리한 교과를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2) 교원이 될 사람을 양성하는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에서는 보건관계 강의를 보다 충실히 하여야겠으며 (이수 교과목에 필수교과로 하여 보건학 관계학점을 높이는 방법등 연구), 학습자도 보건과목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여야겠다.

3) 교원 재교육기관에서는 필히 보건관계 강의를 보다 강화 (연수전체시간수에 비율을 높이는 방법등)하여 교육현장에서 수업부실, 학생들의 무관심 등의 요인을 없애야 겠다고 懸料된다.

參 考 文 獻

1. 문교관계법령집 (1953년), 증문사, 1954,
2. 문교관계법령집 (1964년), 문영문화사, 1964, 12.
3. 문교대법전, 한국법제 연구원, 문교대법전 전찬회 육지사, 1982.
4. 문교법전 (1968년), 보문출판사, 1968.3
5. 문교법전 (1970년), 교학사, 1970.
6. 문교법전 (1972년), 교학사, 1972.
7. 문교법전 (1973년), 교학사, 1973.
8. 문교법전 (1975년), 교학사, 1975.
9. 문교법전 (1977년), 교학사, 1977.
10. 문교법전 (1978년), 교학사, 1978.
11. 문교법전 (1979년), 교학사, 1979.
12. 문교법전 (1980년), 교학사, 1980.
13. 문교법전 (1982년), 교학사, 1982.
14. 문교법전추록 (1981년), 교학사, 1981.
15. 문교부, 한국교육 30년, 1980, pp. 220 ~ 223.
16. 천행문교법규집 (1962년) 세문사, 1962.5.
17. 김화중 : 학교보건과 간호, 수문사, 1984.